

의안번호	2200832
의 퇴 인	이학영의원
회 답 일	2024. 8. 22.
추계번호	24D12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경우 감면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7,900만원, 2029년 2억 2,3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0억 100만원(연평균 2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기준 연령 하향조정(안 제17조제6항)	179	189	200	211	223	1,001	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제6항 (의료지원)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7조제6항(의료지원)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¹⁾에 따라 75세 이상으로서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중 1명(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이며²⁾,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74세까지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을 과거 추이를 바탕으로 추정
-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에 65세 이상 74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 위탁병원 진료행태(수진횟수, 진료단가)는 현행법에 따라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60% 감면대상)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최근 5년간의 위탁병원 진료현황을 바탕으로 추정

1) 현행법 제17조(의료지원)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현행법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기준 연령 하향조정(안 제17조제6항)

- 개정안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므로 진료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65세부터 74세까지의 대상자를 추정한 후 위탁병원의 연간수진횟수 및 진료단가를 곱하여 산출
 - (대상자) 개정안에 따른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는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중 1명임
 -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수는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연평균 증가율(1.3%)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인 65세에서 74세까지 인원은 2024년 6월 기준 해당 연령대 비율(21.7%)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2]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6,144	6,318	6,445	6,476	6,473	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3]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연령별 현황(2024. 6. 기준)

(단위: 명)

	65세 미만	65세~74세 (A)	75세 이상	합 계 (B)	65세~74세 까지 비율(A÷B)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685	1,393	4,344	6,422	21.7%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4]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추정: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A)	6,644	6,731	6,820	6,909	7,000
65~74세 인원 비율(B)	21.7%	21.7%	21.7%	21.7%	21.7%
65~74세 인원(A×B)	1,441	1,460	1,479	1,499	1,5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연간 수진횟수) 유사사례로 현행법에 따라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2023년도 수진횟수(입원 2.6회, 외래 3.3회)를 적용
- (1회당 진료단가) 유사사례로 현행법에 따라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2023년도 진료비 단가(입원 24,461원, 외래 15,200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을 곱하여 추정

[표 5]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유족(60% 감면대상) 위탁병원 진료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입원	진료연인원(명, A)	10,351	9,047	5,710	5,606	9,894	-1.1%
	의료지원대상자(명, B)	3,607	3,773	3,554	3,965	3,772	1.1%
	1인당 진료횟수(회, A/B)	2.9	2.4	1.6	1.4	2.6	-2.2%
	1회당 진료비(원, C/A)	20,771	24,317	24,266	25,442	24,461	4.2%
	총진료비(백만원, C)	215	220	139	143	242	3.0%
외래	진료연인원(명, D)	19,397	17,968	9,620	9,681	12,510	-10.4%
	의료지원대상자(명, E)	3,607	3,773	3,554	3,965	3,772	1.1%
	1인당 진료횟수(회, D/E)	5.4	4.8	2.7	2.4	3.3	-11.4%
	1회당 진료비(원, F/D)	12,889	14,192	14,201	15,366	15,200	4.2%
	총진료비(백만원, F)	250	255	137	149	190	-6.6%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가재정소요) 위에서 산출한 대상자 수에 수진횟수 및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

[표 6]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기준 연령 하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대상자(A, 명)		1,441	1,460	1,479	1,499	1,518	
연간 수진횟수 (B, 회)	입원	2.6	2.6	2.6	2.6	2.6	
	외래	3.3	3.3	3.3	3.3	3.3	
1회당 진료단가 (C, 원)	입원	26,545	27,653	28,807	30,009	31,261	
	외래	16,507	17,201	17,926	18,680	19,467	
총진료비 (A×B×C, 백만원)	입원	100	106	112	118	124	
	외래	79	83	88	93	98	
	합계	179	189	200	211	223	1,001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